

법적 보호는 누가 받는가?

연방 페어 하우스링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서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데 있어 일부 또는 전부에서 심대한 한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거나 또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부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장애를 가진 사람:
 - 신체 장애
 - 정신 장애
 - 신경 장애
 - 발달 장애
 - 에이즈 HIV/AIDS
 - 자폐증, 간질, 근 위축증, 뇌성 마비
- 알코올/마약 복용자로 회복중인 사람
- 기타

동일하게 자택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택영유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나 법률의 변화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Fair Housing Contact Service 이사회

Rillis Money Penny, Jr., President

C. Ann White, Vice President

Russell K. Davis III, Ph.D., Treasurer

Andrea Victor, Secretary
Cleve Breeding
Erika Burney-Hawkins
Robert DeJournett
Todd Evans, Esq.
Sue Turns

여러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아늑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저희 공정
주택마련 서비스(페어 하우스링 컨택
서비스)의 사명입니다.

Fair Housing Contact Service
441 Wolf Ledges Parkway
Suite 200

Akron, Ohio 44311

전화 330-376-6191

무료 전화 1-877-376-6191

입주자/집주인 전화 330-376-0359

팩스 330-376-8391

www.fairhousingakron.org

info@fairhousingakron.org



공정 주택거래 기회

장애인을 위한



공정한 하우스링

Fair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Korean

페어 하우스링 컨택 서비스는
주택구입과 관련한 일련의 차별 및
손해를 방지, 제거하고, 균등한
주택마련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FAIR HOUSING CONTACT SERVICE
441 Wolf Ledges Parkway, Suite 200
Akron, Ohio 44311

이 안내장은 에크론과 캔트 시, 서밋 카운티, 그리고
HUD 국에서 지원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집주인 상담
- 주택구입관련 차별대우 대처지원
- 종합적인 주택구입관련 상담
 - 주택자금조달
 - 대출서류검토
 - 초보 주택구입자
 - HECM 역모기지
 - 채무불이행 (Default) /부동산 유질 처분 (Foreclosure)
- 교육 훈련 세미나
- 난청이나 귀머거리, 또는 비영어권 의뢰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 시력이 나쁜신 분들을 위한 큰 활자체로 된 정보 제공

THE FAIR HOUSING ACT

아래 사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출신국가 장애

종교 가정 형편

추가제공 정보:

- 관련정보 소책자:
 - 입주자/집주인 핸드북
 - 집수리 관련 입주자를 위한 가이드
 -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s)
 - 장애인을 위한 공정주택거래 관련사항
- 전문인 교육
- 멤버십

변경 및 편의

장애인은 자택에 대해 합리적인 변경 및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변경 또는 편의의 요구는 이사 전, 거주시작 후, 또는 퇴거 나 압류 등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장이나 계단에 램프 설치
- 욕조에 손잡이 바 설치
- 귀머거리나 청각장애를 가진 분을 위한 현관 벨 대응 플래싱 전구 및 화재 경보기 설치,

편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잠재 입주자가 향후 거주지 방문시, 사무실이 휠체어 접근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 용이한 타장소에서 미팅.
- 장애인용 동물에 대해서는 "애완동물 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비용 없이 동반 입주를 허용해 주어야 함.
- 잠재 입주자가 귀머거리인 경우, 수화 전문가를 제공하여 입주 가능한 시설을 둘러보거나 임대관련 사항을 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경 및 편의 요청하기

현재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향후 입주장소에 대한 시설 변경 및 편의 서비스 요청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대 및 입주 계약을 하실 때는 변경 및 편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동의 및 지원 내용 약속 관련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우징 차별 고소하기

집을 찾으시는 과정에서나, 현재 거주하시는 시설, 또는 집을 나가는 경우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페어 하우징 연락서비스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저희 기관에 연락하시고 /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시더라도 페어 하우징 연락 센터에서는 차별 행위가 수정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